

【 8 】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11. 18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제정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함(안 제5조)
- 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 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 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법률 제5조 및 영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제1항 별표3에서 납골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의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 라 함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납골시설에 한하여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장소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 연장기간 및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葬事등에관한法律

마. 父母를 제외한 直系尊屬

바. 兄弟姉妹

사. 가目 내지 바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屍體 또는 遺骨을 사실상 관리하는 者

第3條 (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관한 適用排除) 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墓地의 증가로 인한 國土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火葬 및 納骨의 擴散을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여야 한다.

第5條 (墓地 등의 需給計劃 수립)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需給에 관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第2章 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

第6條 (埋葬 및 火葬의 時期) 埋葬 및 火葬은 死亡 또는 死産한 때부터 24時間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妊娠 7月 미만의 死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埋葬 및 火葬의 場所) ①누구든지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외의 區域에 埋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火葬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火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保健衛生상의 危害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 (埋葬·火葬 및 改葬의 申告) ①埋葬을 한 者는 埋葬後 30日 이내에 埋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火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火葬場(第7條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火葬을 하는

(후 125)

562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葬事등에 관한法律

⑤市長·郡守·區廳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的 設置·관리를 許可한 때에는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立木伐採 등의 許可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墓地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私設墓地的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私設火葬場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火葬場(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納骨施設(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遺骨 500軀 이상을 安置할 수 있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民法에 의하여 納骨施設의 設置·관리를 目的으로 하는 財團法人을 設立하여야 한다. 다만, 宗教團體에서 設置·관리하는 경우이거나 民法上 親族關係에 있던 者 또는 宗中·門中の 구성원 關係에 있던 者의 遺骨만을 安置하는 施設을 設置·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墓地 등의 設置制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에는 墓地·火葬場 또는 納骨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改正 2002·1·19>

1. 都市計画法 第3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2. 水道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중증·분증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文化財保護法 第8條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護區域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第16條 (墳墓의 占有面積 등) ①公設墓地,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안의 墳墓 1基 및 당해 墳墓의 床石, 碑石 등 施設物의 設置區域 면적은 10 平方미터(合葬의 경우에는 15平方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個人墓地는 30平方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葬事등에관한法律

③墳墓 1基당 設置할 수 있는 床石·碑石 등 施設物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墳墓의 設置期間)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私設墓地에 設置된 墳墓의 設置期間은 15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경과한 墳墓의 緣故者가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받은 者에게 당해 設置期間의 延長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15年씩 3회에 한하여 당해 設置期間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 合葬墳墓의 경우에는 合葬된 날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 區域 안의 墓地의 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5年 이상 15年 미만의 기간내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延長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延長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 처리) ①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 緣故者는 設置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1年 이내에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고 埋葬된 遺骨을 火葬 또는 納骨하여야 한다.

②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緣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 및 火葬·納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고 埋葬된 遺骨을 火葬하여 일정기간 이를 納骨할 수 있다.

③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墳墓의 緣故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緣故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公告의 기간·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⑤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骨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9條 (墓地의 事前賣買 등의 금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私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전문개정 2001· 1· 27 대통령령제17109호
개정 2002· 4· 20 대통령령제1758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 2 장 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등

제 4 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 6 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 5 조 (화장장의 시설등에서의 화장) 법 제 7 조제 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 4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 6 조 (매장등의 방법등) 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 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화 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 장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 7 조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①법 제1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 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 7 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 8 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 9 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 3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02·4·20>
-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법 제13조제 5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 1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강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③시설화장장 및 시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

(별표 1) <신설 2002. 4. 20>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 7 조의2관련)

1. 공설묘지

- 가.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설 화장장

-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시설

- 가. 공설납골묘
 - (1)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묘

공설납골묘에 관한 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납골당

(1)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2·4·20>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진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 144)

573-5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강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개정 2002. 4. 20>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 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추 144)

573-7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第36編 保健・醫事 第2章 保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후 144)

573-9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제정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함(안 제5조)

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5조제17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2.10.21 - 2002. 11.9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

기타참고사항

○ 경기도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경기도조례 제3202호, 2002.8.19공포)